

#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2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2019. 7. 25.자 조직개편으로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가 신설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당연직 위원 중 혁신 분야 관련 국장을 마을공동체 관련 실·본부·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으로 함(안 제15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 (2019. 8. 16. ~ 9. 5.) 결과: 의견없음

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중 “혁신·주택·경제·복지·문화·자치행정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”을 “마을공동체·주택·경제·복지·문화·자치행정 등 관련 실·본부·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구성) ① ~ 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<u>혁신·주택·경제·복지·문화·자치행정 분야 등 관련 부서 국장으로 한다.</u>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15조(구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<u>마을공동체·주택·경제·복지·문화·자치행정 등 관련 실·본부·국장 및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</u>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해당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(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표시)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

#### 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·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「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이 없음

### 4. 작성자

지역공동체담당관 허민경 (02-2133-6334)